

2023. 06

이슈포커스 2023-02호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산 이슈포커스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 | 박지훈 연구위원

금리 상승에 따른 어가 부채 동향 | 이창수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포커스를 발간 ·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06

이슈포커스 2023-02호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 3
| 박지훈 연구위원
- 금리 상승에 따른 어가 부채 동향 41
| 이창수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및 주요 확인사항

박 지 훈 연구위원
(shjpark@suhyup.co.kr)

목 차

요 약	5
I. 수산공익직불제 도입배경 및 개요	10
II.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15
III. 주요 확인사항	38

요 약

■ 수산공익직불제 도입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 어업, 과도한 어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량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12) 1,091천 톤 → ('16) 908천 톤 → ('20) 934천 톤 → ('21) 943천 톤 → ('22) 887천 톤
- 어촌은 정주여건의 악화와 어촌 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의 발판 계기 필요성이 대두
 - 2045년 전국 연안어촌지역의 87.2% 소멸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 한편,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해양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정부 지원간의 연계가 미흡, 이에 어업인들의 자발적 공익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유인책 필요
 -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 바다고유의 가치 보존, 자연보존,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 기능, 어촌 문화유산 보존, 국토방위, 지역활성화, 어촌경관 형성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현재 수산공익직불제 6종에 대한 자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사업지침의 내용이 다소 어려워 어업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지원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을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산공익직불제 개요

- 개념 :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법률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2021년 3월 1일 시행
- 수산공익직불제 종류(총 6종) :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14년~), ② 경영이양 직불제('21년~),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21년~),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21년~), ⑤ 소규모어가 직불제('23년 4월~), ⑥ 어선원 직불제('23년 4월~)

■ 수산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개요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은 매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함('23년, 370개 조건불리지역 선정됨)
-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80만원(어가 64만원, 어촌공동기금 16만원)
- 신청기간 : ~5월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지급방법 : 11월 이전 지급대상자 신청계좌로 입금

② 경영이양 직불제

- 개요 :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경영을 넘기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만 65세 이상~만 80세 미만의 어업인
- 지원금액 :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만 지원

구 분	연간 지급액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지급
" 2,400만원 초과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지급기간 : 만 65세~만 75세(10년), 만 76세(9년), 만 77세(8년), 만 78세(7년), 만 79세(6년)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지급방법 : 약정체결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개요 : 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 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회사
 - 수산자원보호 의무 : (기본의무) TAC 할당, (선택의무) 택 2개 이상 ①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② 어선감척, ③ 해양쓰레기수거, ④ 그 밖의 의무(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체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 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지원금액 : (2톤이하) 150만원, (2톤이상) 톤수별 구간별 톤당 65~75만 원

〈2톤 이상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제출
- 지급방법 : 10월~11월부터 직불금 지급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개요 : 친환경어업 실천(배합사료·인증)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합사료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로 구분됨
- 지원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 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 인증 직불제 :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 인증종류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 유기자숙 인증
- 지원금액
 - 배합사료 직불제 : 1포당 지급단가는 일반배합사료 9,680원, 곤충분(고품질배합사료) 15,870원
 - 인증 직불제 : 양식품목별×인증 종류별로 차등 지급(607천원~273백만원)
- 신청기간
 - 배합사료 직불제 : ~1월
 - 인증 직불제 : 1~2월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지급방법
 - 배합사료 직불제 : 매월 25일 신청 등록계좌로 입금
 - 인증 직불제 : 12월 신청 계좌로 입금(인증별 3년~5년 동안 지급)

⑤ 소규모어가 직불제

- 개요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
- 지원대상 :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어가
 - 소규모 어가: (어선어업) 5톤 미만, (양식업)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공통) 어업종사기간 3년이상, 신청 직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충족(어업인 2천만원, 어가 4.5천만원)

-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지급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기간 : 4~5월(2023년의 경우임으로 내년 신청기간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지급방법 : 11월 지급대상자 신청계좌로 입금

⑥ 어선원 직불제

- 개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 신청 직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총족(어선원 2천만원, 세대구성원 4.5천만원) 필요
 - 어선 소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지급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기간 : 4~5월(2023년의 경우임으로 내년 신청 기간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지급방법 : 11월 지급대상자 신청계좌로 입금

주요 확인사항

- 수산공익직불제 종류별 신청·접수 기간 다소 상이하므로, 사전에 신청 일자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이하 신청 기간, '23년 기준>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5월 전
 - 경영이양직불제 : 연중 신청(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 1월~2월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 : 올해의 경우 4~5월(올해 4월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내년도의 경우 신청접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
- ※ 해수부의 사업시행지침 상의 직불제 신청기간과, 지자체가 공고하는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거주하는 지자체 공고문 위주로 신청 접수기간을 체크해야 함
- 수산공익직불제 종류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다소 복잡하므로 본인의 사업대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불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이행실적이 중요하므로 성실히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함을 당부

-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는 지원이 불가함을 유념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직불금, 어선원직불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함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중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어업경영체등록*’이 필수임을 유념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함(경영이양 직불금은 제외). ①교육대상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이며, ②교육내용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등을 안내함. ③ 수강방법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및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음. 교육기간 및 주요 사항은 수산교육포털에서 확인해야 함

- 단, 경영이양직불제는 공익기능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어선원직불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임.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해 각 어가의 인력, 어업현황, 생산 정보 등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여야 함.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정책 제언

-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가 점차 확대(기존 4종→올해 6종)되고는 있으나 지급요건 완화, 지급단가 상향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영이양 후계어업인 희망자 풀(pool) 운영 필요
 - 현재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계원 자격 이양을 희망하는 자가 후계어업인을 찾아 매칭(matching)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후계어업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어촌계 가입 희망자를 상시 파악하여 경영을 이양할 희망 후계 어업인 풀(pool)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I 수산공익직불제 도입배경 및 개요

1. 도입배경 및 연구목적

- 최근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 어업, 과도한 어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량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위협
 - 우리나라 어획량은 1986년 173만 톤의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6년 100만 톤 붕괴 이후 현재까지 100만 톤 하회*
 - * ('12) 1,091천 톤 → ('16) 908천 톤 → ('20) 934천 톤 → ('21) 943천 톤 → ('22) 887천 톤
- 어촌은 정주여건의 악화와 어촌 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함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의 발판 계기 필요성 대두
 - 전국 연안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이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봉착*
 - * '45년 전국 연안어촌지역의 87.2% 소멸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
-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해양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익적 기능과 정부 지원 간의 연계가 미흡하며 어업인들의 자발적 공익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인책 부족
 - 수산업은 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
 - 바다고유의 가치 보존, 자연보존,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 기능, 어촌 문화유산 보존, 국토방위, 지역활성화, 어촌경관 형성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5.26.)하여,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수산공익직불제 6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사업지침의 내용이 다소 어려워 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사업을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13가지】

구분	분야	세부 기능	정의
수산업·어촌	해양생태계 보전	생태계 보호	·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제거 · 자연환경 보전 및 유지
		생물 다양성 유지	· 해양포유류 및 포식종 어획금지
		수산자원관리	· TAC 참여, 금어기·금지채장 등 수산자원관리 규정 준수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노력
	국민 생명과 안전	해난구조 및 구호	·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한 구조 · 재해사고 발생 시 구호
		국경 해역 감시	· 조업중인 어선을 통해 타국 어선의 영해 불법침입 및 밀입국 감시 · 조건불리지역 유지 및 해안 감시
수산업	식량과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 깨끗하고 건강한 해역에서 어획한 안전한 수산물 지속적 공급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제공	· 양질의 단백질 등 건강에 이로운 요소가 포함된 수산물 공급
	국가 이미지 제고	글로벌 수산업 지원	· 저소득국 등 어업 후진국에 선진 어업기술 전수 · 도시국과 국제협력 증진
		국가 이미지 형성	· 국제수역에서의 규정 준수 · 연안국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 홍보
어촌	어촌 사회·경제 활력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	· 어촌공동체 유지를 통한 지역 소멸 방지
		수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 수산업 및 어촌 연관사업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어촌경관 및 문화	고유한 어촌경관 형성	· 어촌이 보유한 고유의 자연환경·경관 보전 및 유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 어촌 유·무형 문화유산 가치 증대 및 보존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원출처) : 심성현·오서현·류정곤(2020),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p. 97, 수산경영론집

2. 수산공익직불제 개요

■ 개념

-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수산공익직불제의 공익적 의무범위는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 ② 해양영토 수호, ③ 어촌사회 유지, ④ 해양생태계 보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련 법률

- 수산공익직불제 관련법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로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정부가 공익증진을 위해 부과한 일정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0.5.26.)
 - 수산직불제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목적 및 정의, 구성, 적용대상,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 제2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 수산공익직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 제3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선정, 신청 및 지급 등
- 제4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 수산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지급제한 등
- 제5장 및 6장 : 보칙 및 벌칙

자료 : 법제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검색 일자('23.06.13.)

수산공익직불제 종류

- 현재 기준('23.6) 수산공익직불제는 모두 6종으로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② 경영이양 직불제,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⑤ 소규모어가 직불제, ⑥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 중
- 시기별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 3종(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 그리고 2023년 4월 추가로 2종 신설(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되어 현재 직불제 대상은 총 6종으로 확대됨

* 도서지역 어촌의 조건불리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2012~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사업 시행 중

** 2023년 4월 1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수산공익직불제 추진 경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014년부터 도입
- 2020년 5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20.5.26)
- 2021년 3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3종 신설)
- 2023년 4월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종 신설
 - 수산공익직불제 총 6종으로 확대

자료 : 저자 작성

-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은 각 직불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를 공통요건으로 두고 있음

* 어선원직불제의 경우는 어업경영체 등록 불필요

- 수산공익직불제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단, '경영이양 직불제'는 제외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최대 40% 미지급(1차년도 10%, 2차년도 20%, 3차년도 40%)

-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서 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시행*

* 주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참고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4종이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종이 있음
- 근거법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참고: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요】

- 개념 :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지급 대상 및 농지
 - (쌀직불) '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주요 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검색일: '23.6.14)

Ⅱ 수산공익직불제 현황

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4)】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지급액	• 어가 당 연간 80만 원 - 어업인 지원 64만원(80%)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 16만원(20%)
신청자격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혹은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요건(필수)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어업경영체 등록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허가(면허·허가 신고) 유효 •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 한 명이 신청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수산교육포털 온라인교육: www.susanedu.kr)
신청·지급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시 신청자 계좌로 입금
사업절차	(~2월) 사업대상지역 선정 → (~5월) 신청접수 → (~6월)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 (~7월) 예산안 사전통보 → (7~10월) 관리협약체결 등 → (~11월)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 도입 배경

- 정부는 도서지역 어촌의 조건불리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2014년부터 본 사업 시행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매년 고시 지정)에 거주하는 어업인
 -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36개 시·군·구, 370개 지역 선정*
- (지급액)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에게는 어가당 연간 80만 원** 지급(국고 80%, 지방비 20%)
 - ** ('14년) 50만원 → ('16년) 55만 원 → ('20년) 70만 원 → ('21년) 75만 원 → ('22년) 80만 원
 - 이 중, 80%인 64만 원은 어업인의 소득보조 금액으로 실비 지급되며, 20%인 16만 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금으로 적립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고시】

시·도	시·군·구	대상지역	도서 및 읍·면·동명
합계	36	370	-
인천 (33)	서구	1	세어도
	강화군	10	강화도, 동검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주문도, 아차도
	옹진군	22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야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재도, 영흥도
경기 (20)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4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안고령섬
	김포시	14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읍,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강원(5)	고성군	5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남 (23)	보령시	12	외연도, 고대도, 녹도, 호도, 삼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하육도, 추도, 소도, 효자도
	서산시	4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당진시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서천군	1	유부도
	홍성군	1	죽도
	태안군	2	외도, 가의도
전북 (16)	군산시	9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군	2	내죽도, 외죽도
	부안군	5	위도, 거륵도, 식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210)	목포시	5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울도, 우도
	여수시	33	송도(돌산읍), 금죽도, 송도(율촌면), 소록도, 대륙도, 대운두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내발도, 대항간도, 소항간도, 월호도, 차봉도, 개도, 제도, 하화도, 상화도, 사도, 소여지도, 대여지도, 거문도, 소거문도, 평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야도, 소경도, 대경도
	고흥군	10	죽도, 연흥도, 애도, 특량도, 상화도, 하화도, 시산도, 첨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9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오도

사도	사·군·구	대상지역	도시 및 읍·면·동명
	완도군	48	다량도, 섭도, 소량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총도, 평일도, 황제도, 념도(고금면), 념도(노화읍), 노록도, 노화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념도, 어룡도, 장구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모항도, 초완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청산도, 구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보길도, 예작도, 덕우도, 생일도
	진도군	38	저도, 금호도, 구자도, 모도(익신면), 관매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소성남도, 죽향도, 독거술도, 독거도, 탄향도, 독거혈도, 청등도, 모도(조도면), 진목도, 갈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동거차도, 광도, 맹골도, 죽도, 가사도, 혈도, 송도, 광대도, 주지도, 양덕도
	신안군	59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효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재원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흥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마진도, 울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매도, 당사도, 초란도
경북(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56)	창원시	5	실리도, 송도, 양도, 잠도, 우도
	통영시	34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산양읍),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광도면), 욱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7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거제시	4	화도, 고개도, 이수도, 내도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
제주 (6)	공통	1	제주본도
	제주시	3	비양도, 추자도, 우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자료 : 해양수산부('23.3.7),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고시」

■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할 것
 -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 양식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 혹은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생계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동일 주소) 중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 한 명이 신청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어가 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지급요건

-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 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 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 **유효**해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임.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해 각 어가의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여야 함

- 조성한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해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다음의 준수사항 반드시 이행**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최대 40% 미지급됨

*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서 온라인 교육 시행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함(경영이양 직불금은 제외). ①교육대상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이며, ②교육내용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등을 안내 함. ③ 수강방법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및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음. 교육기간 및 주요 사항은 수산교육포털에서 확인해야 함

-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 ①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②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하지 않을 것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신청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제출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방법)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어촌마을)의 준수 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사업 절차

- (~2월) 조건불리 사업대상지역 선정 → (~5월) 신청 접수 → (~6월)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 (~7월) 예산(안) 사전 통보 → (~7월~10월) 이행점검 및 관리협약 체결 등 → (~11월)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익년 1월) 사업 정산 → (익년 2월~6월) 사후관리

2. 경영이양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경영이양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5)】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어촌계의 계원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인 -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
지급액	•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만 지원
신청자격	•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지급요건	•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지급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 • 약정체결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통장에 입금
사업절차	• 특별자치도·시·군·구별 2023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한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선정신청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 약정체결 → 직불금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도입 배경

-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 2021년 3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어촌계의 계원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포함)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어야 함*

* 2026년까지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준(10년→5년)과 신청 연령(만 65세~75세 미만 → 만 65세~80세 미만)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됨(23.4.1. 개편)

▶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같은 나이일 경우 생일이 빠른 자가 우선)
- 2순위 :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
- 3순위 :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

- (지급액)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연간 지급액으로 지급,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급됨(국비 100%)

【경영이양 직불제 지급금액(검색일: '23.6.15)】

구 분	연간 지급액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지급
" 2,400만원 초과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이어야 함
- (지급요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 체결 전 날 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함
 - (제외사항)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지급이 제외됨
- 경영이양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수산물관계법령 준수, ②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③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 경영이양 직불제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불필요

■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 ①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사본 1부, ②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 (신청 시기)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해당 연도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한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약정 체결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보조금 수령 은퇴어업인 통장에 입금

【연령별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기간(검색일: '23.6.15)】

구 분	지급 기간
만 65세 ~ 만 75세까지	10년
만 76세	9년
만 77세	8년
만 78세	7년
만 79세	6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 사업 절차

- (사전준비)만 60세 이하의 어촌계원 가입조건에 충족되는 계원자격을 이양받을 후계어업인이 있는지 확인 → (신청서 접수)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연중) → (선정)신청서류 검토, 보완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요건이 적합하면 지급대상자로 선정 및 대상자에 결과 통보 → (자격이양 : 30일)지급대상자는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 받을 후계어업인은 어촌계에 가입 → (약정체결)특별자치도지사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약정 체결 → (직불금 지급)계약 체결한 다음 달부터 약정체결 기간동안 매월 15일 직불금 지급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5)】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회사
지급액	• 2톤이하 : 150만원 정액지급 • 2톤이상 : 톤수별 구간(3구간)에 따라 톤당 65~75만 원 수준으로 상이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어업허가 유효할 것 • 조업일수 60일 이상
지급요건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할 것 - 기본의무: TAC 할당 - 선택의무: ①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②어선감척, ③해양쓰레기수거, ④그 밖의 의무
신청방법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구성된 단체가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직불금) 신청
사업절차	• (전년 12월)사업준비 →(1~2월)신청·접수 →(2~3월)사업자선정 →(4월~9월)이행 및 점검 →(10월~)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 도입 배경

-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하고자 2021년 3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지급액) 톤수의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국비 100%)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에 지급)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어선에 지급) :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상한 톤수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톤수비례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검색일: '23.6.15)】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신청자격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기본의무(필수) : 총허용어획량 할당(TAC)
 - 선택의무(2개 이상 선택) : ①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②어선감척, ③해양쓰레기 수거, ④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근해어업에 한해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함

- (신청 제외대상) 감척대상 어선*

* 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 *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어업인 등이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행할 것*

* 준수 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별도 통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검색일: '23.6.16)】

구 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선택의무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일)	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나. 해양쓰레기 수거 다. 그 밖의 의무(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체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②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③수산관계법령 준수, ④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⑤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구성된 단체가 신청 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
 - 신청단체 최소 참여 어선 척수는 근해어선의 경우 10척 이상, 연안어선의 경우 20척이상으로 구성해야 신청 가능. 다만, 연안어선이 해양수산부 및

- 지자체의 TAC 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 시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①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급신청 단체의 준수의무 계획 평가 → ②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 ③준수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연중 점검(상시, 집중) → ④최종 선정된 지급대상단체(구성원)에 직불금 지급
 - (지급방법) 직불금은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 사업 절차

- (전년 12월) 사업준비 → (1~2월) 신청·접수 → (2~3월) 사업자선정 → (4월~9월) 이행 및 점검 → (10월~) 자금배정 및 직불금 지급
- 2022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총 1,249척 신청*
 - 11개 시·도에서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신청
 - * 자료 : 해수부 보도자료, '22.4.20
 - ※ 사업 첫 해인 '21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개념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는 ①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와, ②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로 구분

1)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배합사료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6)】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 배합사료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지급액	• 매월 배합사료 구입비용 × 지급단가 -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면허(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지급요건	•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함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신청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제출
사업절차	• (전년 12~1월)사업계획수립 → (~1월)사업신청 → (~2월)사업자선정 → (~2월)사업물량배정 → (~12월)이행점검 → (12월~)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 도입 배경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지급액) 1포 당 지급단가 9,680원, 곤충분(고품질배합사료)의 경우 15,870원

- 지원한도 : 어가(법인) 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 원 한도
- 매월 25일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포대)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직불금 산출
- * (예) 일반배합사료 40포대 사용 시 → 9,860원×40포대=394,400원

【지급단가(검색일: '23.6.16)】

구 분	최소품질 기준		1포당(20kg) 지급 단가	
	단백질(%)	지방(%)		곤충분
넙치류	54% 이상	6% 이상	9,860원	15,870원
가자미류	52% 이상	5% 이상		
불락류	47% 이상	5% 이상		
돔류	44% 이상	5% 이상		

주) 곤충분 사료: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한정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등록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불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 대상 외 어종에 대하여도 생사료 사용이 많아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예산 지원 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 지급요건

- (대상 양식장)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류, 가자미류, 불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
- 국립수산물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최소품질 기준(검색일: '23.6.16)】

구 분	최소품질 기준	
	단백질(%)	지방(%)
넙치류	54% 이상	6% 이상
가자미류	52% 이상	5% 이상
볼락류	47% 이상	5% 이상
돔류	44% 이상	5% 이상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②수산관계법령 준수, ③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③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제출서류 : ①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②양식업 면허·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④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⑤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⑥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급방법)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사업 절차

- (전년 12~1월)사업계획수립 →(~1월)사업신청 →(~2월)사업자선정 →(~2월)사업물량 배정 →(~12월)이행점검→(12월~)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2)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5)】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친환경어업을 실천(인증)하는 어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어업 확산 등 공익적 기능 제고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지급액	• 양식품목별×인증종류별로 지급(607천원~273백만원)
신청자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지급요건	•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 •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제출
사업절차	• (전년 12~1월)지침시달 및 홍보 →(1~2월)신청·접수 →(3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4월~11월)이행 및 점검 →(12월)보조금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 도입 배경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이어야 하며,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급액) 607천원~273백만원까지 양식품목별과 인증 종류별로 지급
 - 인증종류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 유기지속

- 지원한도 면적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급 단가(검색일: '23.6.16)】

(단위: 천원/ha)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매생이	뽕장어	한파새우	홍합류	넙치류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1,191	272,924	10,965	2,683	242,563
무항생제	-	-	-	595	136,462	5,483	1,342	121,282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595	136,462	5,483	1,342	121,282
인증종류	전복	송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항어	매기	파래
유기수산물	12,27	145,088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604
무항생제	6,135	72,544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	302
유기지속	6,135	72,544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302

주)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하는 자
 - 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이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신청일 현재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 갱신신이 되어야 함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②수산관계법령 준수, ③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④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인증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친환경 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인증면적 단위로 3~5년간만 지급(매년 12월 보조금 지급)

■ 사업 절차

- (전년 12~1월)지침시달 및 홍보 →(1~2월)신청·접수 →(3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4월~11월)이행 및 점검 →(12월)보조금 지급

5. 소규모어가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5)】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공익기능 증진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 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어가(어업법인 제외)
지급액	•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직불금 지급 중복 불가
신청자격	• 소규모어가(이하 주요내용 참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지급요건	• 어선어업: 5톤미만 어선 • 양식업: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액 기준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제출
사업절차	• (3월)계획수립 →(4~5월)신청·접수 →(~6)지급 대상자 선정 →(~7월)예산안 사전통보 →(7월~10월)이행점검 →(~11월)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 도입 배경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2023년 4월 도입·시행됨

■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소규모어가(법인은 제외)
 - 소규모어가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필수 등록***
- *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지급액)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에 따라 지급요건 상이
 - (어선어업) **5톤 미만 어선**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등 **모두 충족**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②수산관계법령 준수, ③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④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중복 지급 불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요건(검색일: '23.6.16)】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 제외	■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어업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신고어업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업 (면허)	■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양식업 (허가)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14.),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방법)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의 직불금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사업 절차

- (3월)계획수립 →(4~5월)신청·접수 →(~6)지급 대상자 선정 →(~7월)예산안 사전통보 →(7월~10월)이행점검 →(~11월)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익년 1월)사업정산 →(익년 2월~6월)사후관리

6. 어선원 직불제

1) 종합 요약

【2023년 어선원 직불제 주요내용 요약(검색일: '23.6.16)】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안정 도모 및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 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액	•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 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직불금 지급 중복 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신청방법	•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사업절차	• (3월)계획수립 →(4~5월)신청·접수 →(~6)지급 대상자 선정 →(~7월)예산안 사전통보 →(7월~10월)이행점검 →(~11월)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자료 : 해양수산부, 2023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참조하여 작성

2) 사업 주요내용

도입 배경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필요, 2023년 4월 도입·시행됨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지원대상)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어선원직불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지급액)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중복 신청불가)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①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②수산관계법령 준수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하여 **1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지급방법)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사업 절차

- (3월)계획수립 →(4~5월)신청·접수 →(~6)지급 대상자 선정 →(~7월)예산안 사전통보 →(7월~10월)이행점검 →(~11월)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익년 1월)사업정산 →(익년 2월~6월)사후관리

Ⅲ 주요 확인사항

- 수산공익직불제 종류별 신청·접수 기간 다소 상이, 사전 신청일자 꼼꼼히 숙지필요
 - 해양수산부가 발표하는 사업시행지침 상, 6개 수산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 기간 상이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5월 전
 - 경영이양직불제 : 연중 신청(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 1월~2월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 : 올해의 경우 4~5월(내년도의 경우 신청접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
 - 해수부의 사업시행지침 상의 신청접수기간과 지자체의 수산공익직불제 사업공고 일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지자체 공고문 위주로 미리미리 신청접수 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수산공익직불제 종류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다소 복잡하므로 본인의 사업대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불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이행실적이 중요하므로 성실히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함을 당부
 - 어선원직불제의 경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는 지원이 불가함을 유념
 - 신청세대 구성원 중 신청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함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중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 단,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는 어업경영체등록 요건에서 제외됨을 유념

-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서 온라인(PC, 모바일) 교육으로 시청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최대 40%가 지급되지 않음을 명심

【정책 제언】

-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가 점차 확대(기존 4종→올해 6종)되고는 있으나 지급요건 완화, 지급단가 상향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수산직불제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보통수준(62점/100점)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사유로 지원규모(74.5%), 지원조건(11.8%), 서류 구비 및 지원절차(7.8%) 순으로 조사됨*
 - *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11),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경영이양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영이양 후계어업인 희망자 풀(pool) 운영 필요
 - 현재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계원 자격 이양을 희망하는 자가 후계어업인을 찾아 매칭(matching)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후계어업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어촌계 가입 희망자를 상시 파악하여 경영을 이양할 희망 후계 어업인 풀(pool)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7), 「202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고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14.),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심성현·오서현·류정곤(2020),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p. 97, 수산
경영론집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 「www.fipa.or.kr」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www.susanedu.kr」

금리 상승에 따른 어가 부채 동향

이 창 수 책임연구원
(changsoo@suhyup.co.kr)

목 차

요 약	43
I. 서 론	45
II.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금리 변동	46
III. 어업인의 부채 동향 및 이자 비용 분석	54
IV. 시사점	68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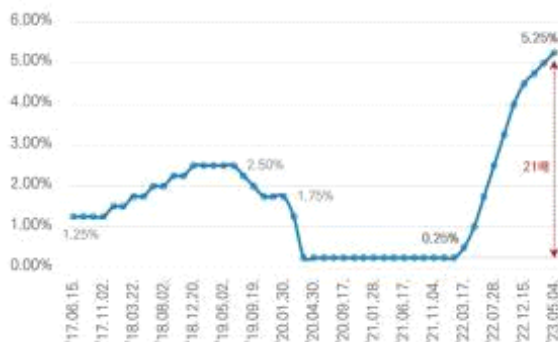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 어려워짐

- 팬데믹 하 경제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으며, 그 여파로 금리 등이 상승하고 있음
- '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원유가격, 소비자물가지수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는 등 어가의 어업경영 및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됨

▶ 금리 상승 폭 : 미국은 21배, 한국은 7배

- 미국은 '22년 들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3년 현재 5.25%를 기록하여 금리 저점인 0.25%에 비해 21배 상승했음
-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3.50%로 '21년 2분기의 0.50%에 비해 7배 상승하였음

- 미국의 금리 변화 추이 -



- 우리나라의 금리 변화 추이 -



▶ 어가의 부채비율은 지난 20년 간 하락세

- '03년 전국평균 21.2%였던 부채비율이 '21년 현재 12.8%로 8.4%p 하락, 지난 20년간 하락세를 지속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 18.3%, 어로어가 9.8%였으며, 어업활동이 활발한 어선 사용 어가의 부채비율(12.9%)이 높은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액은 크게 증가, 어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 '22년 어가 당 평균 이자 부담액은 300만 원 ~ 870만 원*으로 '10년 이후 최대 치였음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의 구간값임

- 우리나라 어가의 총 이자 부담액은 연간 최소 1,3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의 840억 원보다 최대 5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금리 급등은 어가의 이자 부담액의 증가를 야기, 어업경영 및 생활,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 '23년 들어 금리의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고금리 지속 시 어업가구의 어려움 심화 우려, 정책적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어가들은 금리 상승 외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에 직면함
-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책적 대책 강구가 요구됨
 - 단기적으로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이자 유예 등의 방안이 고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 어선 사용 어가에 대한 관심 필요
-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단기 운전성 자금으로 활용되는 영어자금 등 정책금융의 역할 중요

I 서론

■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등은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음
-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건 지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원유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이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였음
-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업경영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어업가구의 자산·부채 동향, 향후 어업가구의 경영 부담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금리 변동에 따라 어업인 부담 증가, 어업경영 악영향 우려

-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일반가계는 물론 어업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화 이전에도 어업인은 담보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자금의 융통 등이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 금리 변동에 따라 어업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측하고,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음

■ 어업인 부채 현황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분석 필요

-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지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어업인의 어업경영 또는 어가경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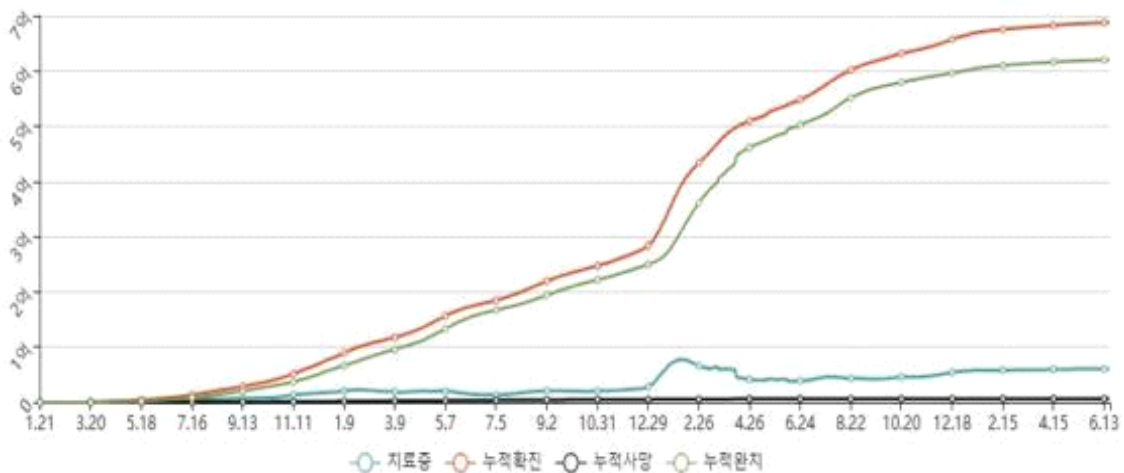
Ⅱ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금리 변동

1. 국내외 환경변화

1) 세계적 보건위기 : 팬데믹(pandemic)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 2019년 1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이 처음으로 발생
 - 2019년 12월 1일, 우한시 의료진이 첫 감염자 확인
 - 2019년 12월 31일, 27명의 원인 미상 폐렴 발병 사실이 WHO에 보고됨
-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
 - 2023년 6월 19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6억 8,615만 8,789명, 사망자는 685만 2,247명 발생



주 : 코로나19 최초 발생부터 현재(2023.6.19)까지의 추이임

자료 : 코로나 보드(<https://coronaboard.kr/>)

【전세계 코로나19 추이】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2023년 6월 19일 현재 누적 확진자 32,018,486명, 사망자 34,960명 발생

■ 백신 개발·접종 및 봉쇄 위주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였음
- 또한 감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함은 물론 일반 시민의 생활도 일부 통제됨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음
 - 대부분의 대면 행사는 취소되었고, 원격, 온라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킴
 - 오늘날 뉴노멀(New Normal)¹⁾로 진입

■ 세계 각국, 팬데믹 기간 내 시민 지원,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을 지원함은 물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음
-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이루어짐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발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한 사태를 말하며,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 공격,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됨

1) 뉴 노멀(new normal)이란 경제, 사회 등이 위기 이후 정착한 상태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표준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제1차 세계 대전, 2007-2008년 금융 위기, 9월 11일 공격, 2008-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 COVID-19 유행병 및 기타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진군을 펼쳤고, 수도 키이우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은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
- 이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인 데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공급

📌 전쟁 여파로 국제 원유가격 상승

- 전쟁 발발로 인해 유럽으로 가스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유가격도 함께 상승했음
- 전쟁 발발 이후(22.3.11), 서부텍사스유의 경우 배럴당 123.70달러, 두바이유는 122.53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함



주 : 2023.06.19 한국석유공사 Opinet 기준

자료 : 네이버 증권(<https://finance.naver.com>)

【원유가격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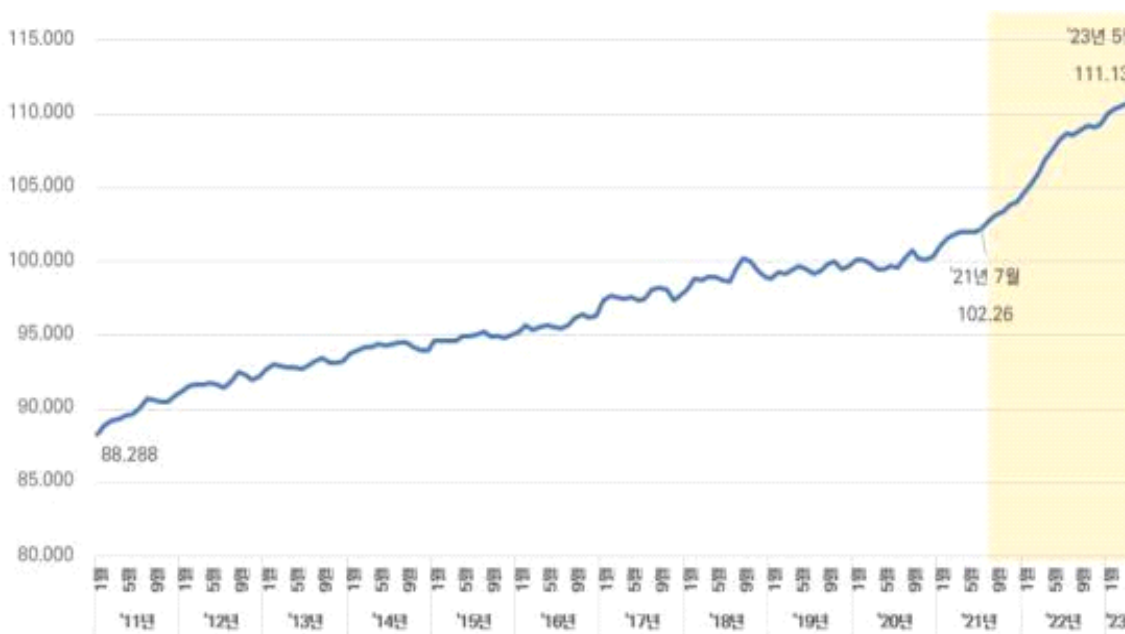
3) 인플레이션

▶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견인

-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부 지출로 인해 발생한 통화량 증가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결과임

▶ 소비자물가지수, '21년부터 급등

-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8년 하반기 10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함
- '21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급격히 상승하여 '23년 5월 현재 111.13을 기록하였음
 - '21년 7월 102.26에서 무려 8.87 포인트 상승
 - '11년 이후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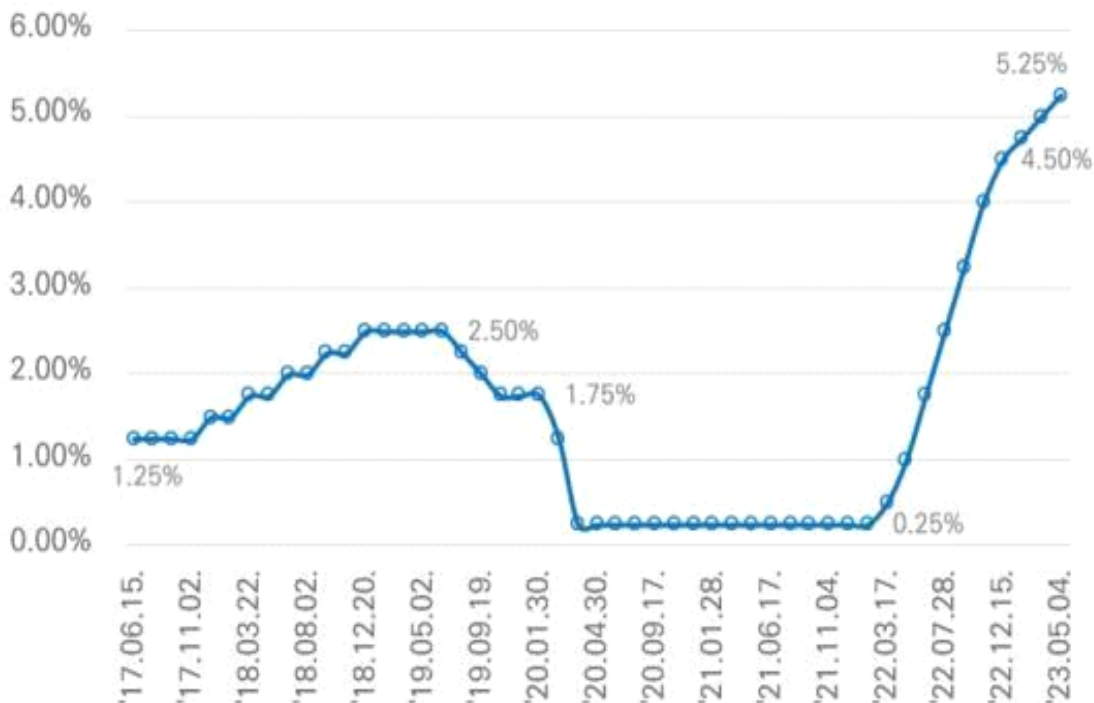
2. 급격한 금리 변동

-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경제지표 중 하나는 금리의 변화이며, 이로 인한 환율의 변동도 눈여겨 볼 사항임

1) 금리 변동 추이

■ 미국의 금리 변동, '22년 이후 급등

- 미국의 금리는 1.25%~ 2.50% 수준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서 0.25%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급격히 상승함
- '22년 말 4.00%를 초과했으며, '23년 5월 현재 미국의 금리는 5.25%를 기록하고 있음
 - 최저금리를 기록했던 '22년 초의 0.25% 대비 21배 상승
- 향후 금리 변화는 경제 상황 및 미 대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등과 맞물려 예측이 매우 힘든 상황임



자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의 금리 변화 추이】

▶ 우리나라 역시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세

-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팬데믹 이전 1.25~1.75%이던 금리는 팬데믹 시기 0.50%까지 떨어졌지만 '21년 3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3년 1분기 현재 3.50%를 기록
 - '21년 2분기의 0.50% 대비 7배 상승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각 연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

2) 환율 변동

▶ 미국과 우리나라 간 금리 차 크게 벌어져

-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추세는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양국 간 금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팬데믹 시기 미국에 비해 0.25% p 높았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2년 하반기부터 역전됨
- 오늘날 양국 간 금리 차이는 1.75% p로 미국이 더 높은 실정임

한미 양국 간 금리 차,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침

- 양국 간 나타나고 있는 금리 차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처의 전환, 투자금의 회수 등 다양한 움직임을 야기
- 그 결과 원-달러 환율도 '22년 9월 30일 기준 1달러당 1,445원으로 최근 10여 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 '14년 7월 4일 1,007원에 비해 300원 이상 상승했음



주 : 2023.06.19 13:54 하나은행 기준 고시

자료 : 네이버 증권(<https://finance.naver.com>)

【환율(원-달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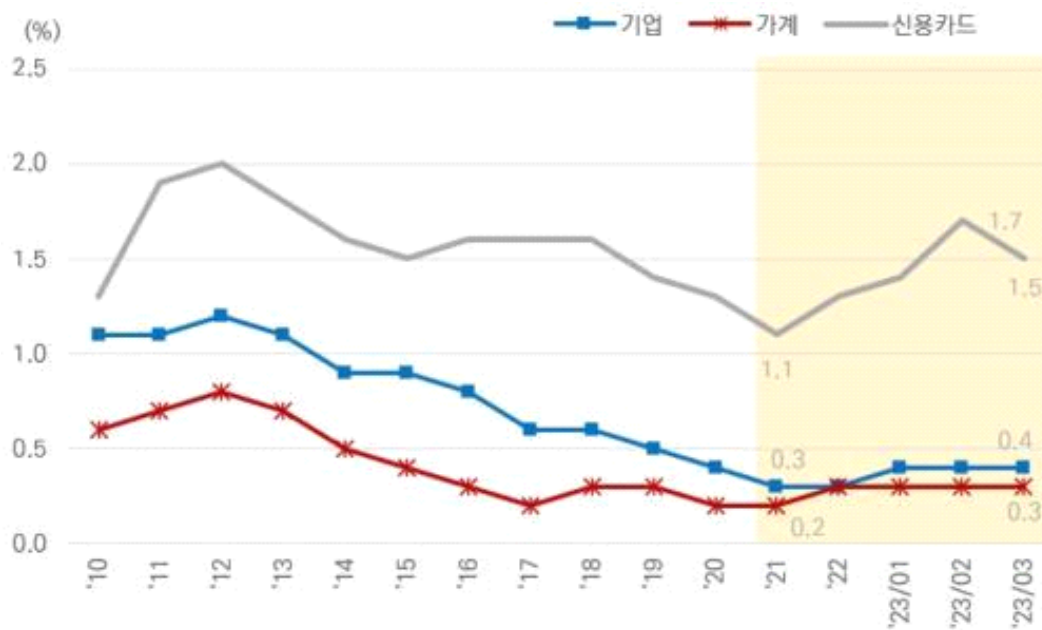
3) 은행대출금 연체율

팬데믹 이후 은행대출금 연체율 다소 상승

- 기준금리의 상승은 시중은행에게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대출자에게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 이에 은행대출금 연체율 역시 금리의 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10년 이후 은행대출금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지만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 가파른 상승세, 최근 반전

-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업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4%와 0.3%인데 반해 신용카드 대출은 1%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특히 '21년에 비해 기업과 가계대출은 0.1% p 상승한 반면 신용카드 대출은 최대 0.6% p 상승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대출금 연체율」 각 연도

【은행대출금 연체율 변화 추이】

Ⅲ 어업인의 부채 동향 및 이자 비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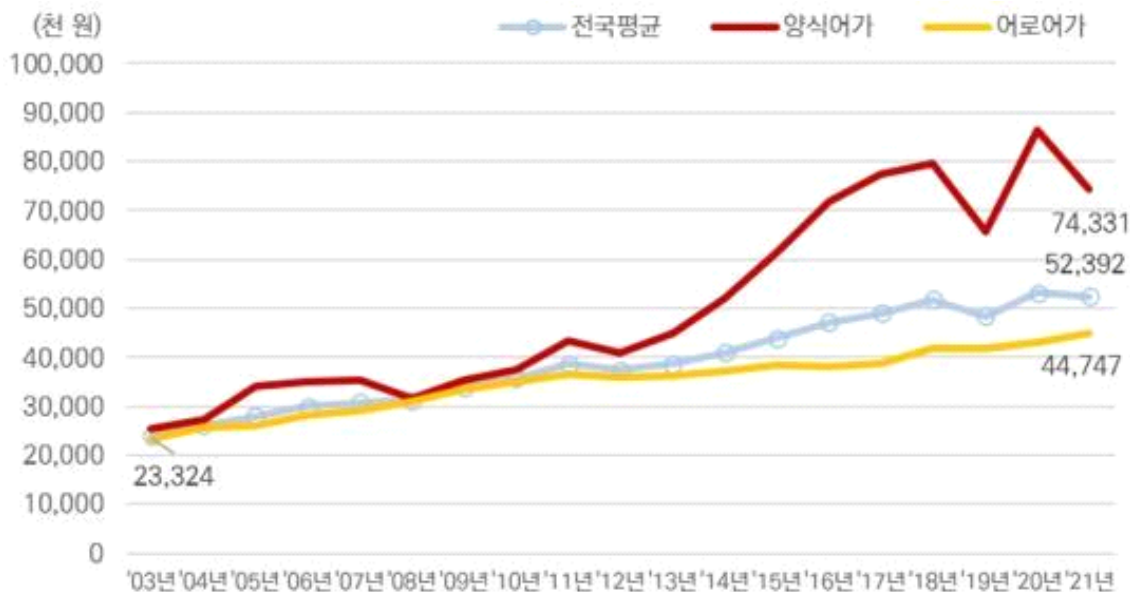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지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가경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장에서는 어업인의 자산·부채 현황 등을 살펴보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을 살펴보고자 함

1. 어가소득 및 자산변화

1) 어가소득

■ 어가소득,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20년간 어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03년 2,332만 원이던 연간 어가소득은 '21년 현재 5,239만 원으로 124.7% 증가하였음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가의 소득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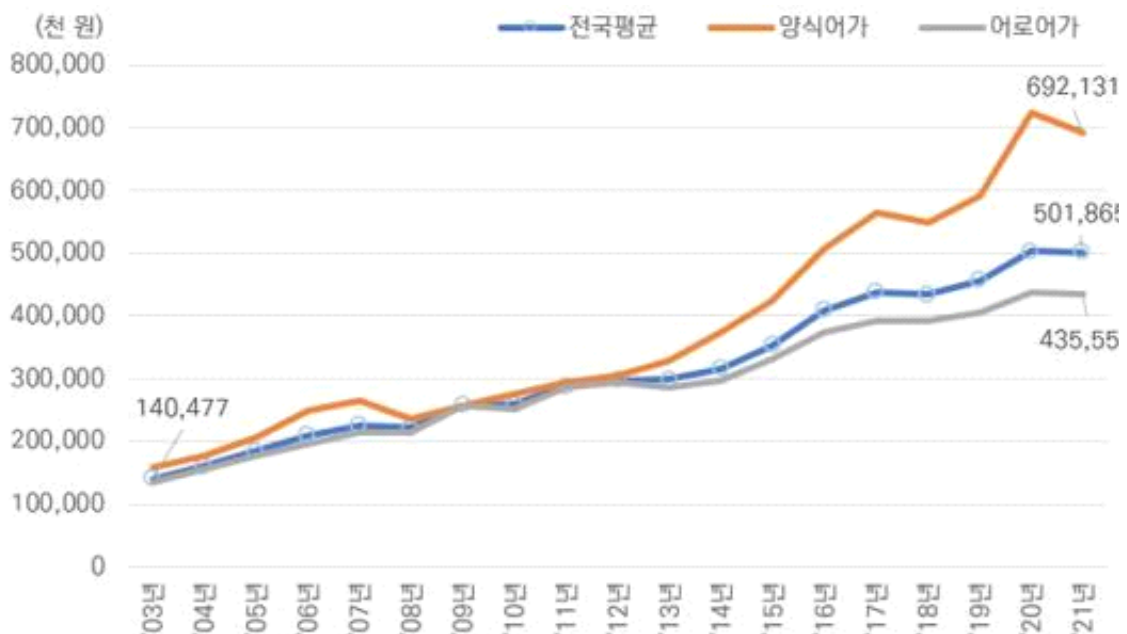
양식어가의 어업소득, 어로어가에 비해 60% 이상 높음

- 업종별로 어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어가소득 평균에 비해 양식어가 소득은 높은 반면 어로어가의 소득은 낮음
- '21년 현재 양식어가의 어업소득은 연간 7,433만 원으로 어로어가의 4,475만 원에 비해 66.1% 높은 수준임

2) 자산변화

지난 20년간 어가 자산은 257% 증가

- '21년 현재 어가 자산은 전국 평균 5억 187만 원으로 '03년 1억 4,078만 원에 비해 257.4% 증가했음
- 이러한 증가세는 양식어가와 어로어가 모두 동일한 추세를 보였음
-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그간의 자산 증가세가 둔화 또는 일시적 감소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가의 자산변화 추이】

양식어가의 자산 규모, 어로어가에 비해 58.9%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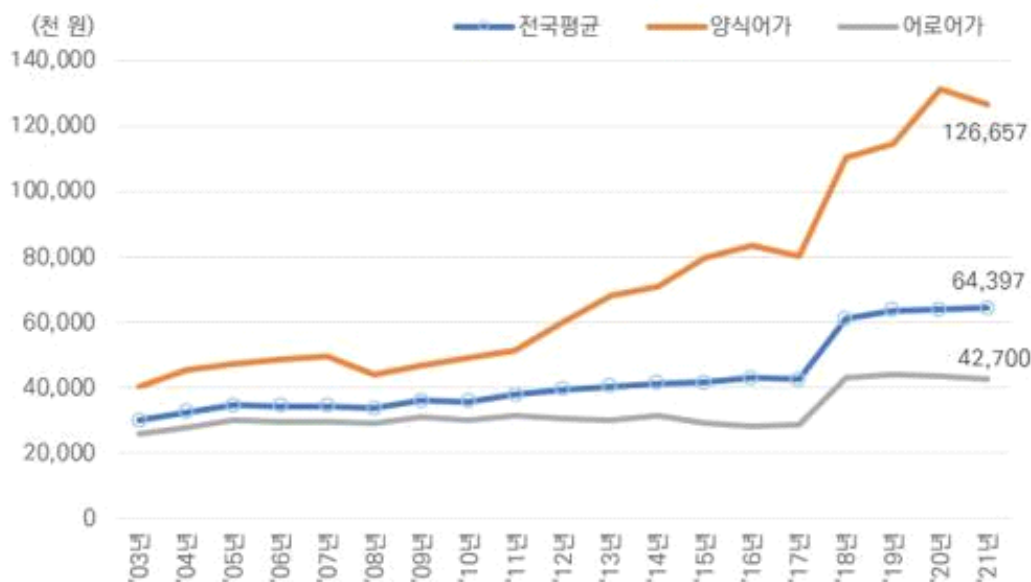
- 어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 역시 양식어가가 전국평균에 비해 더 큰 반면 어로어가는 작은 모습을 보임
- '21년 현재 양식어가의 자산 규모는 6억 9,213만 원으로 어로어가 4억 3,556만 원에 비해 58.9% 큰 것으로 나타남

2. 부채 변화

1) 어가 부채

어가 부채 지속적 증가세

- 어가 부채는 지난 20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8년 이후 크게 증가
 - '03년 3,000만 원 수준에서 '21년 현재 6,44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18년 이후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임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가 어로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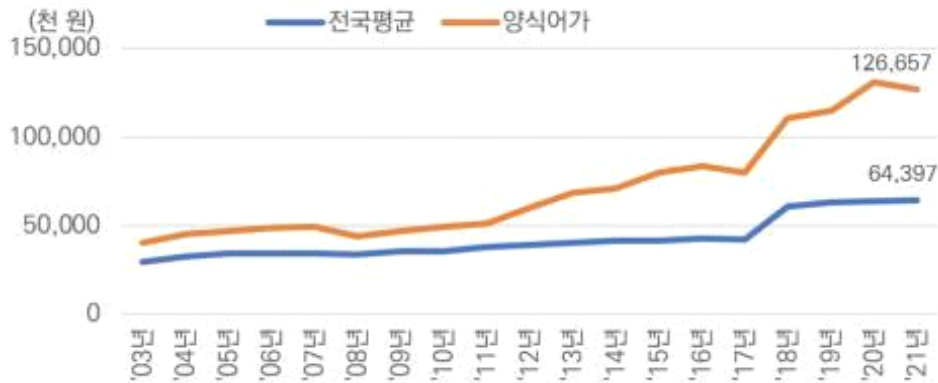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가의 부채액 변화 추이】

양식어가의 어가 부채, '18년 이후 증가세 두드러짐

- '21년 현재 양식어가의 어가 부채는 1억 2,666만 원으로 전국 평균 6,440만 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음
- 특히 최근 과거와는 달리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임
 - '18년 이후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4.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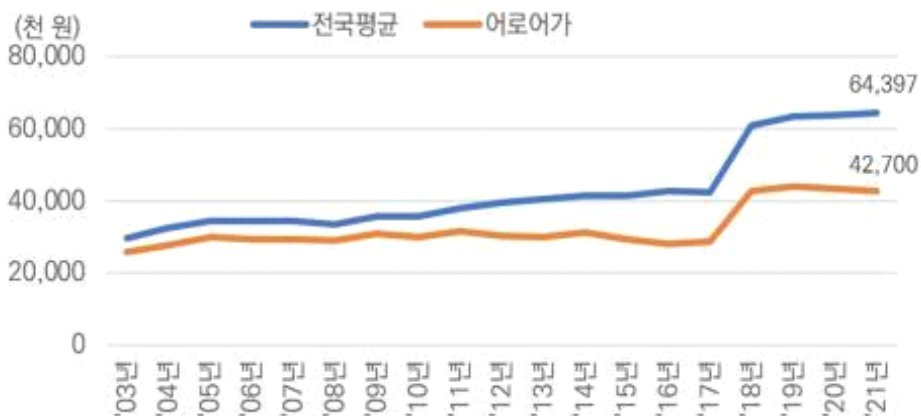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업종별 어가 부채액 변화 추이(양식어가)】

최근 어로어가의 어가부채, 큰 변화 없음

- '21년 현재 어로어가의 어가 부채는 4,270만 원으로 전국 평균 6,440만 원에 비해 2,00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부채의 변화를 보면 '18년 이후 큰 변동은 발견되지 않음
 - '18년 이후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0.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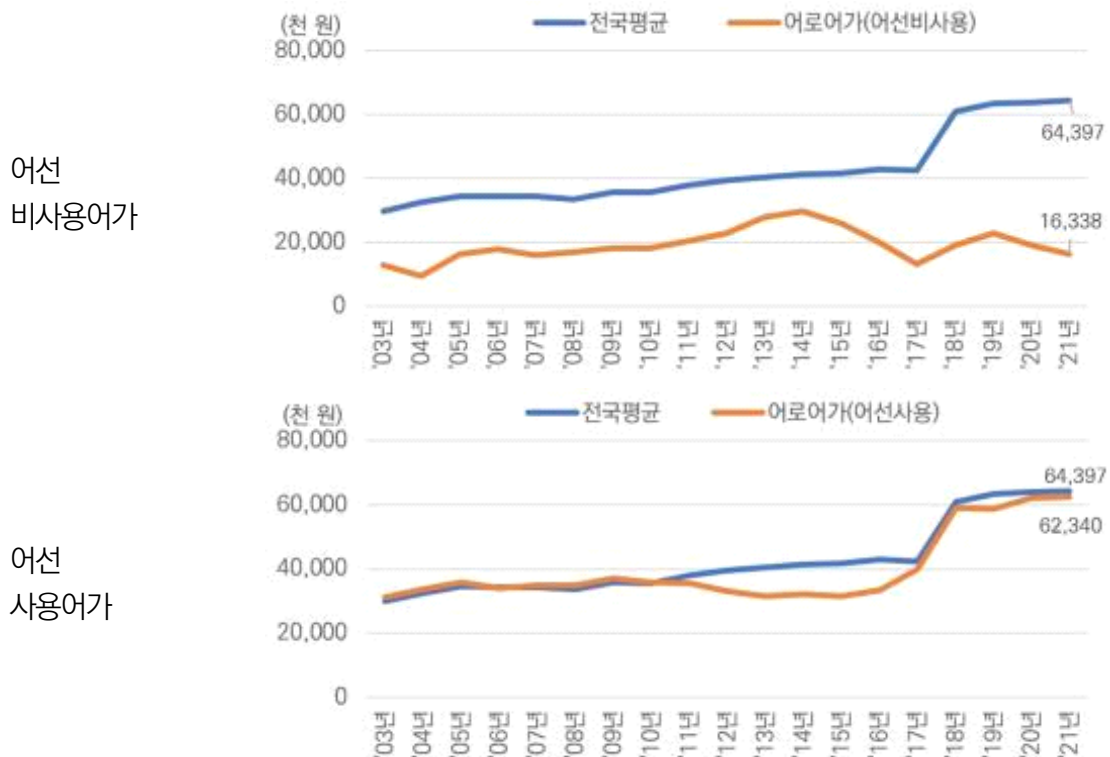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업종별 어가 부채액 변화 추이(어로어가)】

어선 사용 여부에 따라 어가 부채 큰 차이 보임

- 어로어가 중 어선의 사용 여부에 따라 어가 부채에 큰 차이를 보임
-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로어가의 경우 '21년 현재 어가부채는 1,634만 원으로 전국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어선을 사용하는 어로어가의 부채는 6,234만 원으로 전국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18년 이후 어선사용 어로어가의 부채 연평균증가율은 1.8%, 어선비사용 어로어가는 -5.3%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선 사용 여부별 어로어가 부채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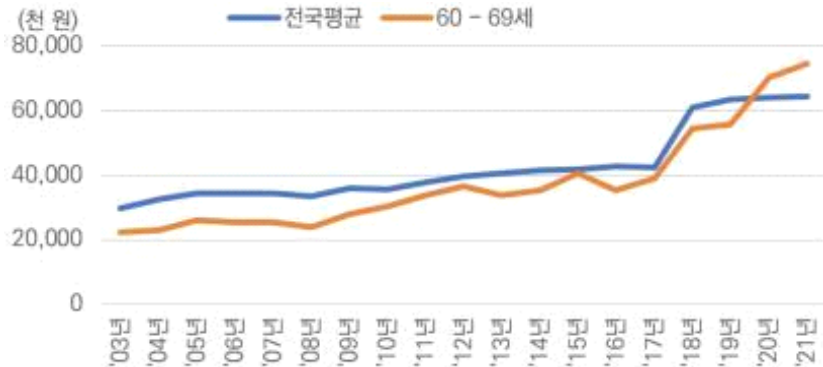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의 어가 부채 전국평균보다 많음

- 연령별로 어가 부채를 살펴보면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70세 미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많은 반면 70세 이상은 부채가 적었음
- 2010년대 중반 이후 70세 미만의 어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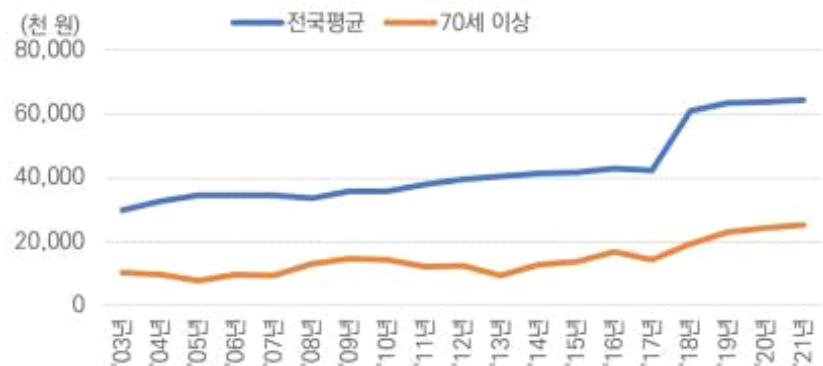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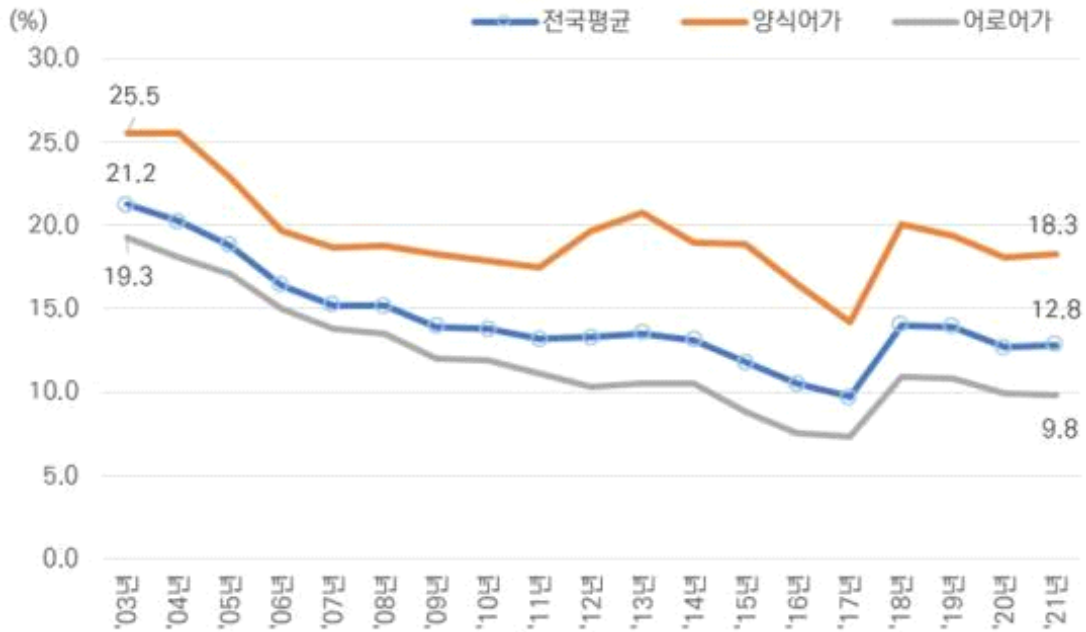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연령별 어가 부채 변화 추이】

2) 부채비율

어가의 부채비율 지속적 하락세

- 지난 20년간 어가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
- '03년 전국평균 21.2%였던 부채비율이 '21년 현재 12.8%로 8.4%p 하락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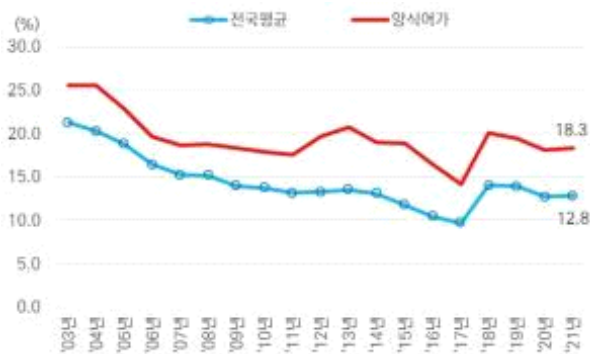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가의 부채비율 변화 추이】

양식어가의 부채비율, 어로어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 업종별로도 재정적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양식어가가 높은 반면 어로어가는 낮음
- 양식어가의 부채비율이 18.3%로 어로어가의 9.8%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양식어가



어로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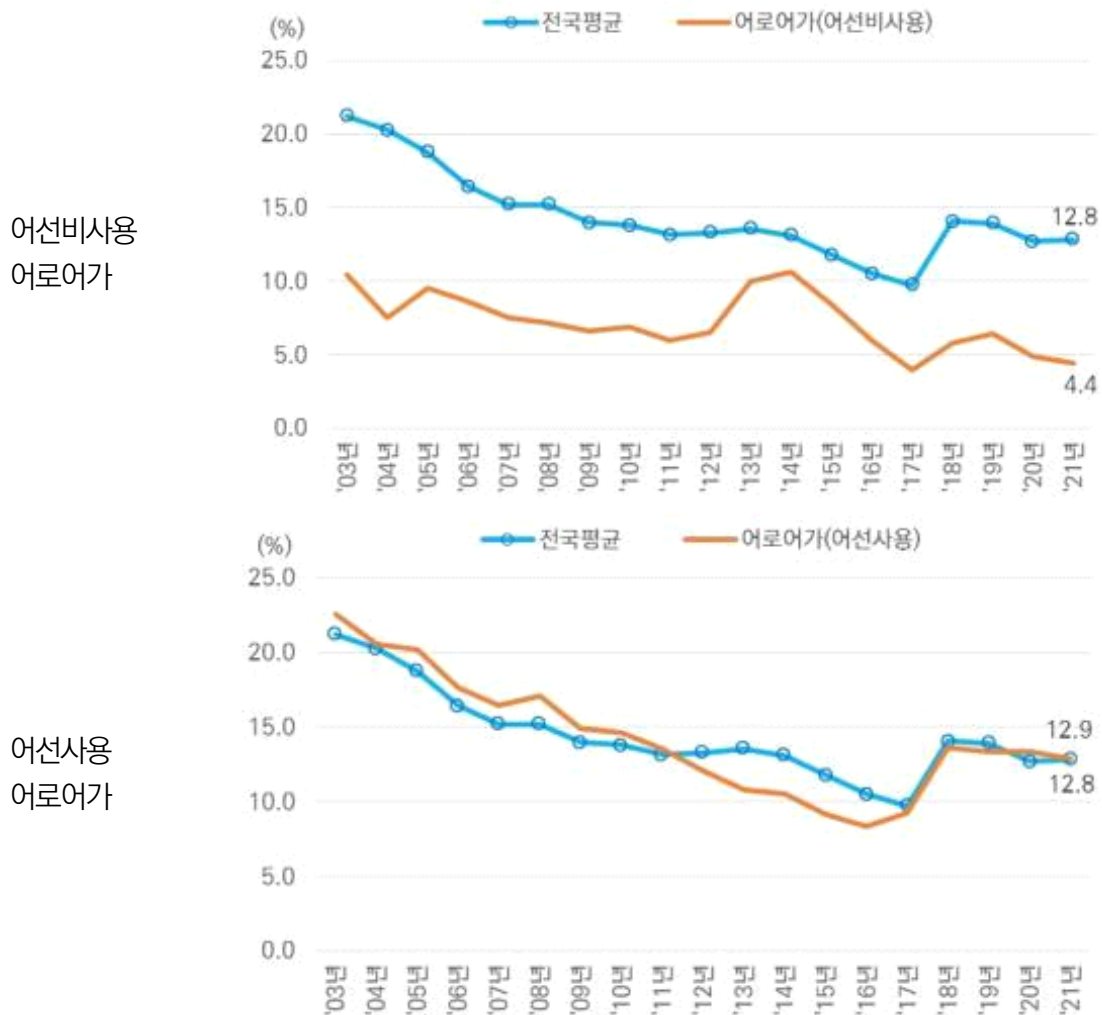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업종별 어가 부채비율 변화 추이(양식어가)】

어로어가의 부채비율, 어선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 보임

- 어가 부채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 역시 어선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음
-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로어가의 부채비율은 4.4%인데 반해 어선을 사용하는 어가는 12.9%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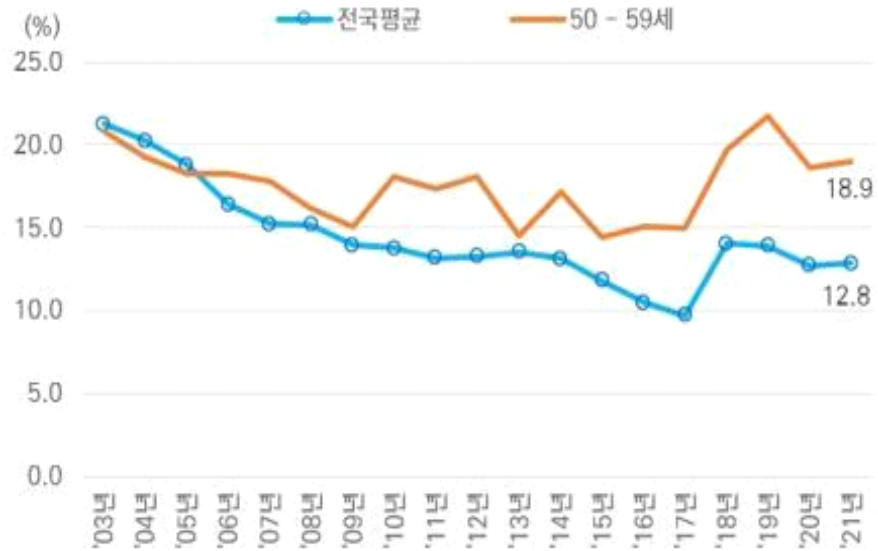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어선 사용 여부별 어로어가 부채비율 변화 추이】

60세 미만 어가 전국평균 부채비율보다 높음

- 연령별로 부채비율이 차이를 보이는데, 60세 미만 어가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더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낮은 특징을 보였음
- 다만 60-69세의 경우 '20년 이후 부채비율이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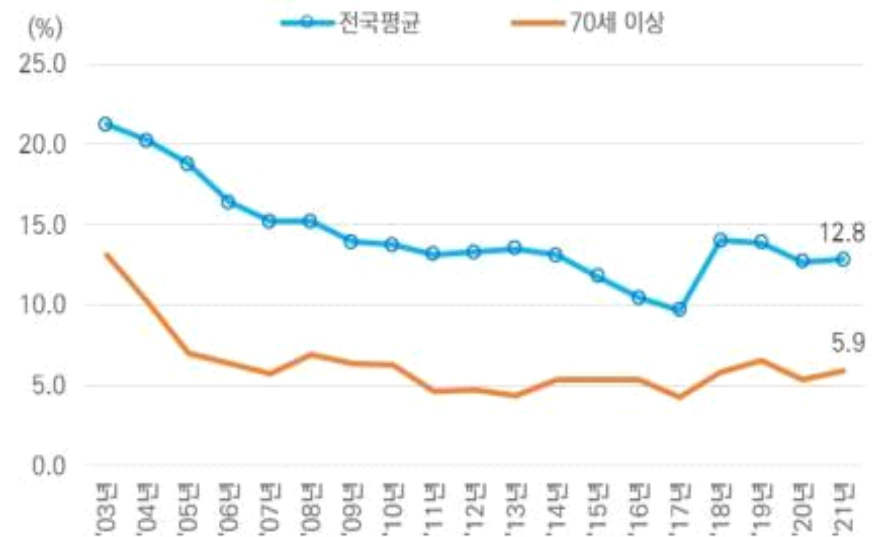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연령별 어가 부채비율 변화 추이】

3) 부채 성격별 분포

- 부채의 성격, 차입원, 용도 등에 따라 부채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며, 분석 자료는 최근 5년 부채의 평균을 활용하였음

■ 고정부채 비중 90% 이상, 대부분 금융기관 이용

- 부채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고정부채의 비중이 전국평균 95.1%에 달했음
- 어가별로는 양식어가가 어로어가에 비해 고정부채 비중이 높고 어로어가 중에서는 어선 사용 어가의 유동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양식어가는 양식시설에 대해 고정적인 부채를 가지는 반면 어선 사용 어가는 운영 자금을 부채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차입원별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였음
- 다만 어선 사용 어가의 경우 개인 등으로부터 대출하는 비중이 1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추측됨

【업종별 부채의 성격·차입원 비중(최근 5년 평균)】

(단위 : %)

구분	성격			차입원		
	합계	고정부채	유동부채	합계	금융기관	개인 등
전국평균	100.0	95.1	4.9	100.0	93.0	7.0
양식어가	100.0	96.7	3.3	100.0	95.6	4.4
어로어가	100.0	93.5	6.5	100.0	90.5	9.5
어선 비사용	100.0	94.8	5.2	100.0	94.6	5.4
어선 사용	100.0	93.2	6.8	100.0	89.5	10.5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부채의 용도에 따라 그 비중을 살펴보면 어업용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계용 21.1%, 겸업용이 12.9%, 그리고 기타가 5.6%였음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가 어업용 부채의 비중이 80.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어선 비사용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1.8%에 불과했음

- 어선 비사용 어가는 가계용과 겸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가 각각 45.7%, 43.3%로 높았으며, 어선 사용 어가도 가계용 대출의 비중이 2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 부채의 용도 비중(최근 5년 평균)】

(단위 : %)

구분	합계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전국평균	100.0	60.4	21.1	12.9	5.6
양식어가	100.0	80.7	10.9	5.1	3.3
어로어가	100.0	40.8	30.9	20.5	7.8
어선 비사용	100.0	1.8	45.7	43.3	9.2
어선 사용	100.0	49.8	27.4	15.3	7.5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70세 이상 유동부채 비중 높고, 개인 등에게 대출 비중도 높음

- 연령별로도 고정부채의 비중이 90% 이상이었는데, 70세 이상의 유동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차입원도 개인 등의 비율이 70세 이상에서 13.9%로 높게 나타났음
 - 70세 이상의 경우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등의 대출원에 더 의존적이라고 추론됨

【연령별 부채의 성격·차입원 비중(최근 5년 평균)】

(단위 : %)

구분	성격			차입원		
	합계	고정부채	유동부채	합계	금융기관	개인 등
50세 미만	100.0	96.4	3.6	100.0	97.4	2.6
50 - 59세	100.0	96.4	3.6	100.0	94.8	5.2
60 - 69세	100.0	94.4	5.6	100.0	92.7	7.3
70세 이상	100.0	92.8	7.2	100.0	86.1	13.9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연령 높을수록 어업용 대출 비중 낮음

- 부채의 용도도 연령이 높을수록 어업용 부채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음
- 어업용 대출의 비중은 50세 미만이 67.1%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줄어들어 70세 이상의 경우 44.5%를 기록했음

- 70세 이상은 가계용과 겸업용의 비중이 25.5%, 21.5%로 이 둘의 합이 어업용 대출 비중보다 높았음

【연령별 부채의 용도 비중(최근 5년 평균)】

(단위 : %)

구분	합계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50세 미만	100.0	67.1	18.3	9.8	4.8
50 - 59세	100.0	66.9	19.3	9.4	4.4
60 - 69세	100.0	58.4	21.9	14.1	5.6
70세 이상	100.0	44.5	25.5	21.5	8.6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이자 비용 분석

🔪 이자 비용 분석 방법

- 어가의 이자 비용은 어가의 부채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22년의 이자 비용은 추정하였음
 - 분석자료 상 '22년의 부채자료가 없기 때문에 '21년의 부채액이 이후에도 변함이 없음을 가정하였음
- 이자 비용 추정을 위해 사용한 금리는 잔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 중 가계대출 금리였으며, 가장 높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가계자금대출 금리였음
 - '22년 들어 대출금리는 대부분 상승했는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가계자금대출 금리는 13.74%에서 13.46%로 하락한 특징을 보임

【연도별 금리 현황】

(단위 : %)

구분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가계대출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10	6.02	5.35	10.18	20.46
'11	6.20	5.82	10.32	22.79
'12	5.43	5.17	9.66	22.58
'13	4.87	4.54	8.49	18.74
'14	4.37	4.02	8.19	16.04
'15	3.70	3.35	8.11	16.29
'16	3.53	3.18	7.76	15.64
'17	3.62	3.35	8.17	14.81
'18	3.81	3.62	8.24	14.62
'19	3.46	3.34	7.49	14.71
'20	2.83	2.77	6.33	14.34
'21	3.07	3.01	6.44	13.74
'22	5.13	4.66	7.72	13.46

자료 : 한국은행

■ '22년 어가의 이자 비용 부담액, 어가당 870만 원 선으로 단기 급등

- 어가의 이자 비용 부담액은 부채액 및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적용한 금리에 따라 최솟값과 최댓값의 구간으로 정리하였음
- 이자 비용은 '16년 어가당 평균 136만 원 ~ 671만 원으로 '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22년은 300만 원 ~ 86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양식어의 평균 이자 비용이 590만 원 ~ 1,70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사용 어로어도 평균 291만 원 ~ 839만 원에 달했음
 - 최솟값과 최댓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21년 대비 '22년의 이자 부담액 증감률을 추정하면 '21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어가의 이자 비용 추정】

(단위 : 천 원)

구분	전국평균	양식어가	어로어가	어선 비사용	어선 사용
'10	1,907 ~ 7,292	2,630 ~ 10,057	1,615 ~ 6,175	982 ~ 3,756	1,920 ~ 7,341
'11	2,204 ~ 8,629	2,998 ~ 11,738	1,840 ~ 7,206	1,186 ~ 4,643	2,073 ~ 8,116
'12	2,043 ~ 8,923	3,105 ~ 13,561	1,571 ~ 6,861	1,181 ~ 5,159	1,710 ~ 7,469
'13	1,835 ~ 7,575	3,102 ~ 12,803	1,367 ~ 5,643	1,261 ~ 5,204	1,434 ~ 5,919
'14	1,664 ~ 6,641	2,848 ~ 11,363	1,256 ~ 5,010	1,195 ~ 4,769	1,297 ~ 5,175
'15	1,395 ~ 6,784	2,677 ~ 13,017	983 ~ 4,782	874 ~ 4,248	1,058 ~ 5,143
'16	1,363 ~ 6,705	2,653 ~ 13,049	892 ~ 4,386	636 ~ 3,126	1,059 ~ 5,210
'17	1,422 ~ 6,287	2,683 ~ 11,863	966 ~ 4,271	443 ~ 1,959	1,332 ~ 5,891
'18	2,208 ~ 8,919	3,998 ~ 16,146	1,552 ~ 6,267	696 ~ 2,811	2,140 ~ 8,644
'19	2,121 ~ 9,340	3,825 ~ 16,847	1,473 ~ 6,485	762 ~ 3,358	1,964 ~ 8,649
'20	1,770 ~ 9,164	3,633 ~ 18,808	1,204 ~ 6,231	533 ~ 2,760	1,722 ~ 8,914
'21	1,938 ~ 8,848	3,812 ~ 17,403	1,285 ~ 5,867	492 ~ 2,245	1,876 ~ 8,566
'22	3,001 ~ 8,668	5,902 ~ 17,048	1,990 ~ 5,747	761 ~ 2,199	2,905 ~ 8,391

■ 어업가구 총 이자 부담액 3,700억 원 수준

- 어업가구 전체의 이자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1,276~3,687억 원으로 추정되어 '21년 대비 최대 52.0%(-3.8* ~ +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자 부담액의 -3.8% 감소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가계자금대출 금리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이미 고금리 수준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의 총 이자 부담액은 660~1,905억 원, 어로어가는 624~1,803억 원으로 추정됨

【업종별 이자 부담액('22) 규모 추정 결과】

(단위 : 가구, 억 원, %)

구 분		전국평균	양식어가	어로어가	어선 비사용	어선 사용
가구 수	'21년	43,328	11,228	32,100	5,723	26,377
	'22년	42,536	11,174	31,362	5,593	25,769
이 자 부담액	'21년	840 ~ 3,834	428 ~ 1,954	413 ~ 1,883	28 ~ 128	495 ~ 2,259
	'22년	1,276 ~ 3,687	660 ~ 1,905	624 ~ 1,803	43 ~ 123	749 ~ 2,162
	'21년 대비	-3.8 ~ 52.0	-2.5 ~ 54.1	-4.3 ~ 51.3	-4.3 ~ 51.3	-4.3 ~ 51.2

주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를 활용하여 추정

☞ 단기 금리 급등으로 인해 어가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함

IV

시사점 : 고금리 지속 시 어가의 어려움 심화 예상

▶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 어려워짐

- 팬데믹 하 경제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함
- '22년부터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이 두드러짐

▶ 어가의 부채비율은 지난 20년 간 하락세

- '03년 전국평균 21.2%였던 부채비율이 '21년 현재 12.8%로 8.4%p 하락, 지난 20년간 하락세를 지속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 18.3%, 어로어가 9.8%였으며, 어업활동이 활발한 어선 사용 어가의 부채비율(12.9%)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액도 크게 증가, 어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

- 최근 금리의 급격한 상승 결과 팬데믹 이전에 비해 미국은 21배, 우리나라는 7배 높은 수준임
- 어가의 이자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22년 어가 당 최대 870만 원(300만 원 ~ 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어가의 총 이자 부담액은 연간 최소 1,3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의 840억 원보다 5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금리 급등은 어가의 이자 부담액의 증가를 야기, 어업경영 및 생활,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업종별로는 양식어가, 어선 사용 어가에 대한 관심 필요

- 어업활동이 활발한 양식어가와 어선 사용 어가는 비교적 부채액이 많고, 부채 비율도 높은 편
- 이들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영어자금 등 정책금융의 역할 중요

- 어가 부채의 성격을 보면 유동부채의 비중은 10% 미만이었지만 실제 운전자금으로 추론됨
- 운전자금의 경우 영어자금 등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한 것으로 어업경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함

■ 고금리 지속 시 어업가구의 어려움 심화될 것, 정책적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어가들은 금리 상승 외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에 직면함
- '23년 들어 금리의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임
-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책적 대책 강구가 요구됨
 - 단기적으로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이자 유예 등의 방안이 고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참고문헌】

박지훈·박진규(2015), '영어자금지원 효과분석', 수산현안분석,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한국은행(2022),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 2022-28호.

한국은행(2022),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 리뷰 2022-7호

한국은행(2023), 경제전망보고서 2023.5

한국은행(2023), '금리인상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 평가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제 2023-10호

한국은행(202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3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3-02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	장	노	동	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엄	기	두	
수산경제연구원	전화	(02) 2240-0416			
연락처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주)에이치에스광장 (02)-573-4954				
발행일	2023. 06				

〈비매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